

의안번호	2207808
의 퇴 인	박용갑 의원
회 답 일	2025. 3. 26.
추 계 번호	25B053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 및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항목에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을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억 2,400만원(연평균 1억 2,5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 추가(안 제63조)	100	102	104	106	108	520	104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포함 사항 추가(안 제64조)	20	20	21	21	22	104	21
합계	120	122	125	127	130	624	125

주: 1.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및 보고서 항목에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을 포함하기 위해 항공사 및 공항의 교통약자 서비스 실태조사, 항공사 및 공항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3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제2항제4호 신설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음 <u>4.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u>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 추가	의무규정
2	안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2항제4호 신설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u>4.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u>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 추가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3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제2항제4호 신설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2항제4호 신설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실시 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조사 및 연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현재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및 보고서 발간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항목에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을 추가하기 위한 재정소요가 추계기간 중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 추가(안 제63조제2항제4호 신설)
 -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제63조에 따라 매년 국적 항공사, 외국적 항공사 및 국내공항에 대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예산은 2025년 기준 5억 5,500만원임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 10.)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단위: %)

[표 1] 현행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개요

- (근거) 항공사업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훈령)
 - (평가주체) 국토교통부장관(「항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
 - (평가대상) 국적 항공사, 외국적 항공사* 및 국내공항
 - * 항공법 개정('16.6.23 시행)으로 외항사에 대한 서비스평가 신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운항 저조, 이용자 감소로 평가 제외
 - (평가주기) 매년(1.1.~12.31.)
 - * '12.7월 제도 도입, '13년 시범평가 및 결과공표('14.7), '14~'15년부터 2개년 평가를 본격 적용, '18년부터 연간 평가로 전환, '24년부터 중간결과 발표
 - (관련예산) 2025년 기준 555백만원²⁾ (최근 3년 매년 동일 예산 편성)
 - (평가항목) 정량평가 위주, 정성평가(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도 활용
 - * (항공사) 4대 분야(운항신뢰성·이용자보호충실성·안전성·이용자만족도)
 - (공항) 4대 분야(수속신속성·수하물처리 정확성·이용편리성·이용자만족도)
 - (평가방법) 53개 항공사(국적사 10, 외항사 43)의 운항신뢰성, 이용자 보호충실성 등을 평가하고, 6개 공항(이 외 9개 공항은 시범조사)의 신속성, 수하물 처리 정확성 등을 평가('24년 평가 기준)하며, 항공사와 공항을 대상으로 한 약 2만 건 이상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만족도 점수 산출
 - LCC 사업운영방식의 특수성을 고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시 FSC와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나, '16년~'17년부터 통합평가
 - 항공사의 서비스 제고 유도 및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24년부터는 공표 주기를 확대(연1회 → 연2회, 11월·5월)
- < 참고: 평가점수별 등급 >

점수	90 이상	90~80	80~70	70~60	60~50	50 미만
등급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불량)	F (매우불량)

- 정성평가 등급 : 매우만족-만족-다소만족-보통-다소불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
- '22년 결과부터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급별 세분화(예시 A, A+, A++) 하여 발표

- (결과공표) 평가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서비스 개선명령 등

자료: 국토교통부

2) 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교통시설특별회계, 3637-314)의 내역사업인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및 보고서 발간 사업

- 개정안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을 추가할 경우 실태조사 용역비, 인건비, 출장비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억 2,000만원(연평균 1억 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 추가를 위해서는 항공사 및 공항의 교통약자 서비스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용역비, 전담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관련 출장 경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재정소요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표 2]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 추가를 위한 비용 내역

- 위탁용역비: 48,906,000원		
· 항공 분야에 특정됨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의 유사 용역인 「교통약자 실태조사 용역」 소요 비용의 50% 수준으로 책정		
구 분	[교통약자 실태조사 용역]	(가칭) 항공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총 액	97,812,000	48,906,000
1. 직접인건비	65,516,080	32,758,040
2. 직접경비	15,203,200	7,601,600
3. 일반관리비	4,035,964	2,017,982
4. 이윤	4,164,756	2,082,378
5. 부가가치세	8,892,000	4,446,000

→ 50% 수준

- 인건비: 1인×12월×4,025,654원³⁾(참여율 50%) = 48,307,846원
 - ※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 실시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 국내출장비: 1인×18일×150,000원/일 = 2,700,000원
 - ※ 항공사 및 공항 현지 조사 등을 위한 출장 연 18회 실시 기준
- 합계 99,913,846원

자료: 국토교통부

3)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용역단가 적용

구 분	기준단가 (50%)	기준단가 (100%)	인건비 계상단가	참여율	최종단가
연구원	2,841,638	5,683,276	8,051,308	50%	4,025,654

주: 계상단가=기준단가×17/12(연 급여 12월, 상여금 4월, 퇴직급여충당금 1월)

자료: 국토교통부

[표 3]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 추가	100	102	104	106	108	520	104

주: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 평가를 위해 항공사 및 공항의 교통약자 서비스 실태조사, 항공사 및 공항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 추가 (안 제64조제2항제4호 신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항공교통사업자·이용자 현황, 피해현황, 서비스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연 단위로 발간하여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 중에 있으며, 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은 2025년 기준 1억원임
 - － 현행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는 정부, 공항공사, 한국소비자원이 보유한 정보 및 국내외 항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등 산재적으로 나뉘어 있는 항공서비스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구성·제작

[표 4] 현행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개요

- (근거) 「항공사업법」 제64조 및 제7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 (발간주체) 국토교통부장관(「항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
- (발간주기) 매년(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 매월(항공소비자리포트)
- (발간방법) 국토교통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게재
 - *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에어포탈,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
- (관련예산) 2025년 기준 100백만원⁴⁾ (최근 3년 매년 동일 예산 편성)
- (포함내용)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사별 정시성·서비스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유용한 정보 제공

자료: 국토교통부

4) 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교통시설특별회계, 3637-314)의 내역사업인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및 보고서 발간 사업

- 개정안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항목에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을 추가할 경우 인건비 및 출장비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 400만원(연평균 2,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항목 추가를 위해서는 전국 15개 공항 시설 및 운영 현황 파악 및 이슈 발굴 등을 위해 전담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관련 출장 경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재정소요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표 5]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항목 추가를 위한 비용 내역

- 인건비: 1인×12월×1,449,235원⁵⁾(참여율 18%) = 17,390,825원
 - ※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 실시중인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작성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 국내출장비: 1인×18일×150,000원/일 = 2,700,000원
 - ※ 공항 시설 및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출장 연 18회 실시 기준
- 합계 20,090,825원

자료: 국토교통부

[표 6]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항목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항목 추가	20	20	21	21	22	104	21

주: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항 시설 및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용역단가 적용

구 분	기준단가 (50%)	기준단가 (100%)	인건비 계상단가	참여율	최종단가
연구원	2,841,638	5,683,276	8,051,308	18%	1,449,235

주: 계상단가=기준단가×17/12(연 급여 12월, 상여금 4월, 퇴직급여충당금 1월)

자료: 국토교통부

IV. 부대의견

-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및 보고서 항목에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 편의성을 포함하기 위해 항공사 및 공항의 교통약자 서비스 실태조사, 항공사 및 공항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1] 한국공항공사 교통약자 편의시설('25.1월 기준)

□ 공동이용

(단위: 명/개)

구분	포티 케어 톡톡	전용 상담 (콜센터)	시니어 서포터즈 ¹⁾	헬프 포인트	이동지원 서비스 (포티케어)	전용 승하차 구역	우선 보안 검색대	장애인 화장실
김포	카카오톡 기반 온라인 서비스 제공	고객 만족 센터 서비스 제공	140	8	2	2	2	60
김해			150	2	—	2	2	52
제주			24	1	—	1	3	66
대구			20	1	—	1	2	18
울산			9	1	—	1	1	11
청주			48	1	—	1	2	23
무안			—	1	—	2	2	15
광주			14	2	—	2	1	6
여수			6	3	—	1	1	6
포항			2	1	—	1	—	3
양양			12	1	—	1	—	11
사천			—	2	—	2	—	5
군산			4	—	—	1	1	2
원주			—	1	—	1	1	2
계	14	14	429	25	2	19	18	280

주 1) 시니어 서포터즈: '25. 상반기 배치 예정 인원(매칭완료)
자료: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전용

(단위: 대/개)

구분	휠체어 이용객				영유아동반			시청각장애인	
	렌터카 무상 대여	수동휠체어 전동화 키트	교통약자 셀프 체크인	휠체어 대여	유아 휴게실	어린이 놀이터	유모차	수어 통역	촉지도
김포	—	40	4	10	10	2	10	2	4
김해	—	21	4	7	4	1	7	1	2
제주	3	30	4	3	5	1	3	3	4
대구	—	—	4	2	2	1	1	1	2
울산	—	—	2	5	1	—	1	1	1
청주	—	—	2	1	3	—	1	1	1
무안	—	—	—	2	1	1	—	1	1
광주	—	—	2	1	1	—	1	1	2
여수	—	—	2	2	1	—	1	1	2
포항	—	—	1	1	1	—	1	1	1
양양	—	—	—	3	1	1	2	1	1
사천	—	—	—	1	1	—	1	1	1
군산	—	—	—	1	1	—	1	1	1
원주	—	—	—	1	1	—	1	1	1
계	3	91	25	40	33	7	31	17	24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2] 인천공항 교통약자 서비스 및 시설 현황('25.1월 기준)

□ 교통약자 서비스 현황

구 분	주요내용
교통약자 헬프폰	접근교통 하차 후 헬프폰을 통해 안내데스크와 직접 연결 (T1 8개소, T2 16개소) 문의사항 답변 및 휠체어·전동차 이동서비스 제공
시각·청각장애인 전용 서비스	음성안내유도기, 점자 이용안내 책자 히어링루프, 안내방송 시각안내
대여서비스	안내데스크를 통해 휠체어, 돋보기, 유모차, 미아방지 팔찌 대여 가능 교통약자 서비스센터(T1 2개소) 및 A/S 자율 유모차 대여소(T1 4개소, CON 1개소, T2 4개소)에서 직접 대여 가능 장애인 안심여행센터에서 휠체어 대여 가능
전동차서비스	9대 운영 중 (T1·T2 L/S 및 A/S 각 2대, CON 1대) * 항공사 및 공항철도 소유 전동차 제외 헬프데스크 통해 예약 이용 또는 안내데스크 신청 통해 즉시 이용 가능 장애인 안심여행센터 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이용 가능
교통약자 전용 출국장	체크인 시 증빙 후 스티커 수령하여 이용 (T1 교통약자 우대출구 및 T2 교통약자 전용 출국장 이용)
점자안내 리플렛	안내데스크, 장애인 안심여행센터에서 점자 리플렛 제공

자료: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시설 현황

구 분		주요내용
교통 시설	장애인전용주차장	T1 단기(108면), 장기(298면) T2 단기(205면), 장기(372면) 행사용(14면), 합동청사(28면)
	교통시설	T1 음향신호기(64개), 점자블럭(7,011개) T2 음향신호기(38개), 점자블럭(5,054개)
	장애인정차장	아웃커브 승용차 정차라인 내 교통약자 전용 정차구역 운영 (T1 3개소 및 T2 2개소)
교통 약자 전용 시설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키오스크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객이 사용 가능한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키오스크(T1 G/L 체크인카운터 각 1개소)
	수하물 수취구역	교통약자 전용 수하물 수취구역(T1 23개소, T2 20개소)
	장애인전용화장실	자동문, 비상전화, 자동형 세면대/세정장치 * 모든 여객용 화장실 내 위치
	영유아편의시설	T1, CON 유아휴게실(14개소), 놀이시설(9개소) 등 23개소 운영 T2 유아휴게실(10개소), 놀이시설(6개소) 등 16개소 운영
	교통약자 전용 대기좌석	탑승게이트 및 체크인 카운터 인근 승객 대기공간 내 교통약자 전용 대기좌석 설치
	전동휠체어 충전기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가 직접 급속충전, 핸드폰 충전 및 바퀴 공기 주입 이용 가능
안내 시설	교통약자 전용 안내카운터	휠체어 탑승 여객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낮은 높이의 교통약자 전용 카운터 설치
	교통약자 서비스센터	교통약자 전용 라운지 및 전동차 대기소 운영 (T1 2개소) * T2 1개소 '25. 2월 오픈 예정 휠체어 및 유모차 자물대여 가능 혈압계, 체온계 등 의료보조 기구 운영
	장애인 안심여행센터	장애인 여객 대상 출국 편의 지원 서비스 제공 공항 이용 안내, 셀프체크인 지원, 휠체어 대여, 전동차 이동서비스, 전동휠체어 충전소 운영 T1 3층 중앙 1개소
이동 편의 시설	층간이동시설	T1 엘리베이터(162대) 탑승동 엘리베이터(45대) T2 엘리베이터(106대)

자료: 국토교통부